

2022년도 상시면접 제1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

공 고

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제 2021 - 225호

2022년도 상시면접 제1회 해기사시험을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14일

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

1. 면접시험 시행직종 및 등급

○ 1급~6급 항해사 및 기관사, 1급~4급 운항사 및 통신사, 소형선박조종사

2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응시원서 교부

1) 인터넷 다운로드

○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 후
➔ 고객마당 ➔ 자료실 ➔ 해기사시험 응시원서 출력(앞, 뒤 양면으로 출력)

2) 방문교부

○ 부산지역 :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(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 소재)

나. 응시원서 접수

1) 접수기간 : 2022. 01. 05.(수) ~ 01. 07.(금)

2) 접수방법

○ 인터넷 접수 :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
접속 ➔ 원서 접수 ➔ 본인인증(휴대폰 or 아이핀)
➔ 해기사 ➔ 원서접수

○ 방문접수 : 접수처에 방문 접수

○ 우편접수 : 접수처에 우편 접수(수수료 동봉)

3) 접수시간

- 인터넷 접수 : 접수 시작일 10:00 ~ 접수 마감일 18:00까지
(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)
- 방문 및 우편 접수 : 접수 시작일 10:00 ~ 접수 마감일 18:00까지
※ 단,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.

4) 접수장소

- 부산지역
-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(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 소재)

3. 시험일시 및 장소

- 가. 일 시 : 2022. 01. 15.(토), 10:00부터
- 나. 장 소 :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관 등(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 소재)
- 다. 지참물 : 신분증

4. 합격자 발표

- 가. 일 시 : 2022. 01. 17.(월), 17:00
- 나. 장 소
 - 1)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 →
접수 및 합격자 정보 → 합격정보 → 확인
 - 2) 단문자(SMS) 발송 : 휴대폰 문자 서비스 제공

5. 응시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

- 가. 응시원서(소정양식) 1부
- 나. 사진 1매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, 탈모 가로 3cm×세로 4cm)
- 다. 응시수수료

구 분	금 액
1, 2급 (항해사, 기관사, 운항사, 통신사)	15,000원
3, 4급 (항해사, 기관사, 운항사, 통신사)	14,000원
5, 6급 (항해사, 기관사)	13,000원
소형선박조종사	10,000원

라. 기타 구비서류

-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(2012.10.31)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. 시험응시자는 **응시원서만 제출**
- 지금까지 필기시험 전부면제(면접응시) 또는 일부과목을 면제 받기위해 제출 하던 증빙서류(승무경력증명서 등)는 **면허발급신청 시 지방해양수산청에 한번만 제출**

- ☞ 단, 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,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.
- ☞ 면제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면,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없음.

※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6.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안내

가.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

-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 후
➔ 바로가기 메뉴(시험접수 접수확인) ➔ 본인인증(휴대폰 or 아이핀)
➔ 접수 취소
-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.

나.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

-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lems.seaman.or.kr>) 접속 후
➔ 바로가기 메뉴(시험접수 접수확인) ➔ 본인인증(휴대폰 or 아이핀)
➔ 접수 환불
-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.
- 환불 요청 후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.
- ※ 환불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1.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2.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: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
3.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: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
4.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
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

5.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
6.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
 - 6-1.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·(외)조부모·형제·자매, 배우자,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
 - 6-2.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)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(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)
 - 6-3.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시 국가(공공기관 포함) 및 의료기관 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, 격리대상자로 판정(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) 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국가(공공기관)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)
 - 6-4.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, 외출 등이 금지되어(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)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)
 - 6-5.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)

7. 응시생 주의사항

- 가.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, 인터넷 접수자는 접수 후 응시표에 응시직종, 시험장소 등을 필히 확인합니다.
- 나. 접수된 응시원서 및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다. 접수된 서류에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, 시험시행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.
- 라. 면접시험 응시자에게는 시험전일에 확정된 면접시간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.

- 마. 면접시험의 합격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시험당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8. 참고사항

- 필기시험 전부면제(면접시험)를 받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,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.
- ⇒ **면제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면,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없음**

* 예시 1)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 인정 여부

-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위한 합정경력은 2011. 2. 14.이후부터 승무경력 인정

* 예시 2) 승무경력기간 계산

선박직원법시행령 제7조(승무경력기간의 계산)

- ①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,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,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.

-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

- 기타,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또는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종합민원실

* 연락처 : 콜센터 1899-3600, FAX 051-624-9081

* 주 소 : 49111,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번지

- 능력평가팀 : ☎ 051-620-5831~5, FAX 051-626-7556